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13
----------	-------

발의연월일 : 2025. 10. 27.

발 의 자 : 안도결 · 임호선 · 조인철
이용선 · 전용기 · 박홍배
박민규 · 양부남 · 김우영
정진욱 · 복기왕 · 손명수
민병덕 · 박지혜 · 조계원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현행법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최대 6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여 주고 있음.

한편, 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지원금, 민생회복소비쿠폰 등의 지원금은 비과세되고 있는 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어 정부의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부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에 대하여도 비과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여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제8항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3의 제목 중 “공제부금에”를 “공제부금 등에”로, “소득공제 등”을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자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서 거주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받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금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받는 지원금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6조의3(소기업 · 소상공인 <u>공제</u> <u>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u>) ① ~ ⑦ (생 략) <u><신 설></u>	제86조의3(소기업 · 소상공인 <u>공제</u> <u>제부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u>)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u>지방자치단체가 거주자의</u> <u>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 가입을</u> <u>장려하기 위하여 거주자에게</u> <u>지급하는 지원금으로서 거주자</u> <u>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소기</u> <u>업 ·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u> <u>받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소득</u> <u>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u>
⑧ (생 략)	⑨ (현행 제8항과 같음)